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90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유신, 박민정, 임남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은주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5. 2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소106880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21. 3. 16.까 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회사인 원고의 C 보험 등에 가입한 후, 2008. 7. 29.경부터 2008. 8. 18.경까지 21일간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우측족관절 염좌 및 인대 손상 등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8. 8. 20.경 원고로부터 보험금 5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8.경까지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8,15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02. 5.경부터 2008. 5.경까지 원고를 비롯한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 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20.경부터 2013. 6. 21.경까지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5,566,46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5고단980), 위 법원은 2018. 3. 15.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8노74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6. 18.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8. 8. 20.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8,15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피고는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부산지방법원 사건의 공소사실이 이 사건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2,170,000원(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18,15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 합계 5,980,000원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편취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위 창원지방법원 사건의 공소제기시인 2015. 4. 29.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후 2015. 4. 29.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980호로 피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8. 3. 15.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점, ② 피고는 같은 법원 2018노74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8. 항소기각 결정을 한 점 ③ 원고는 2018. 11. 28.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빨라도 피고에 대한 위 제1심 형사판결이 선고된 2018. 3. 15.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 보험금 12,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6. 19.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2021. 3. 16.자 준비서면 송달일인 2021.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외에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전액을 인용하였고,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를 추가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의사가 일부 기각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선택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선택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취소하고¹⁾,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태영, 판사 심재남, 판사 최규연

1)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심된 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원심이 한 것처럼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안 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7587, 7594 판결 등 참조).